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관한 ‘보고’를 ‘통보’로
변경〉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047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지정 해제 등에 관한 ‘보고’를 ‘통보’로 변경	2
※ 참고자료	
1. 상권활성화사업 개요	9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출연월일 : 2024. 6. 27.
3. 회부연월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지정 해제 등에 관한 ‘보고’를 ‘통보’로 변경

개정안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 제19조의6 및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생략)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② ----- ----- ----- ----- ----- ----- ----- <u>통보</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① (생략)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 ----- ----- -----

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략)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승인 취소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6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u>통보</u>-----.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통보</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통보</u>-----.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자료의 제출) ① ----- ----- ----- ----- <u>제출</u>-----.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르면,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여, 관할구역 안의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전년도 현황 등도 매년 ‘보고’해야 함.

2023년 10월 27일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¹⁾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의 사전 차단, 자치법규의 정비를 현장에서 밀착지원하는 법제자문관 운영,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국정과제의 신속 입법 추진 등임.

1) 「지방자치법」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 결과의 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을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개요²⁾

□ 추진배경

-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요소
 - 중앙의 입법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 사무에 관한 규범은 지방이 스스로 정립하도록 할 필요

□ 주요내용

-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는 법령정비 추진
 - 중앙·지방 협업으로 법률 81개, 하위법령 65개 일괄정비 추진
 - ※ 2023.11.10. 국무회의 후 법률 국회제출 및 하위법령(시행령 41, 시행규칙 24) 11.16., 11.17. 공포·시행 추진
- 입법 과정 중 행안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및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자치입법권 제약 내용을 사전 차단
- 중앙·지방 인적 협력체계(법제자문관)를 통해 법령 정비에 따른 조례 적기 마련 및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역 현장에서 밀착지원

□ 기대효과 또는 향후계획

-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하기 위한 자치입법권 보장

이에 따라,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 또는 보고를 사후 통보나 의견 제출 등으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서는 ‘보고의무’를 하급 행정기관이 상급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행정기관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 등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에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

2)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2023. 11. 10.)

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리고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감독권의 일환으로 보고를 하게 하는 것과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함³⁾.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보고’는 대등한 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보고’ 대신 특정 사실의 발생 등을 알린다는 의미의 ‘통보’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하급기관이나 피감독기관의 입장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통보’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여짐.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 내용의 통보(안 제19조의5제2항 전단)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의 전년도 현황 등 제출(안 제69조제1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법 시행규칙⁴⁾ 정비를 위해 소요

3)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3」, 2023.12., pp.477~479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되는 기간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5제2항 전단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 다수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그 결과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임.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 제출 현황

연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소관위원회
1	22010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220104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06-27	국토교통위원회
3	22010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7	보건복지위원회
4	220105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06-27	국토교통위원회
5	2201059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06-27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6	220112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06-28	보건복지위원회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변경)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전년도 현황
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 전년도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한다)

연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소관 위원회
7	220119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06-28	환경노동 위원회
8	220119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06-28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문 의 처

02)6788-5465

【참고자료】

1

상권활성화사업 개요

□ 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테마공간 조성, 상품 개발, 판촉 등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지원

* 연차별 선정계획(누계, 곳): ('18)3 → ('19)12 → ('20)20 → ('21)29 → ('22)34

- **(지원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 4호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권법 제15조의 자율상권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① 상업지역 100분의 50 이상, ② 점포수 400개 이상(시·군·구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이상), ③ 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

** **(자율상권구역)** ① 상업지역 100분의 50 이상 포함, ② 점포수 100개 이상, ③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 최근 2년간 계속 감소

- **(신청요건)** ①(상권활성화구역) 상인·임대인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등, ②(자율상권구역)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2/3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등

- **(지원규모)** 구역당 5년간 100억원 내외(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주요내용

-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 힐링 등이 이루어지는 상권 조성

* 상권 자체의 핵심 역량(음식, 의류, 디자인 등) 및 지역 특화산업 등과 연계

-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사업을 추진

* 예시) 환경개선(HW)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테마별 거리 디자인 등

활성화(SW) : 테마존운영(음식, 패션 등), 특화상품 개발, 판로지원, 홍보 등